

# 냉동소정액(수정란)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젓소개량에 대한 낙농가의 인식이 점차 높아짐과 더불어 계획교배용 수입정액(수정란)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농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지침을 시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수산부 대축 27424 - 134 호 (88년 2월 2일)

## 1. 목적

정부의 가축개량계획에 의거 혈액갱신용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냉동 소정액과 냉동 소 수정란의 원활한 공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 하고자 함.

## 2. 기관별 업무

- 지역축협, 업종조합장 : 수입냉동 소정액(수정란) 실수요자 확인원 발급 및 사후관리
- 사단법인 한국중축개량협회장 : 수입냉동 소정액(수정란) 검토의견서 발급 및 혈통확인

## 3. 용어정의

- “정액” 이라함은 외국에서 수입한 냉동 소정액 및 수정란을 말한다.
- “확인원 발급기관” “사후관리기관” 이라함은 실수요농가(양축중인법인체 포함)의 신청에 의거 수입냉동 소정액(수정란) 실수요자 확인원을 발급하는 지역축협 및 업종 조합장을 말한다.
- “의견서발급기관”이라 함은 사단법인 한

국중축개량협회를 말한다.

## 4. 추진요령

### 가. 확인원 발급

1) 확인원 발급기관은 실수요 농가로 부터 “별첨 1” 서식에 의한 확인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발급하되, 연간소요량을 감안하여 이중으로 발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확인원 발급시 수입정액 소요량은 수정대 상두수(15개월령 이상)이내 두수에 두당 1.5개(연간 두당 소요량)을 곱한 양을 소요량으로 하되, 숫자를 투명테이프로 봉하여야 하며, 등록우를 사육중인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3) 확인원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4개월로 한다.

4) 확인원 발급기관은 “별첨 2” 서식에 의거 확인원 발급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전매등 사후관리 불실농가에 대하여는 2년간 확인원 발급을 중지한다.

### 나. 정액 검토의견서 발급

1) 의견서 발급기관은 관계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매년의 수입정액 규격을 정하여 관계기관(농림수산부, 수입상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2) 규격미달 정액에 대하여는 의견서 발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검토의견서 사본 1부를 실수요자에게 송부하여 정액사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다. 수입추천 신청

1) 추천기관 : 농림수산부 장관

2) 신청대상자

가) 국·공립기관

나) 정액제조 공급기관

다) 자체조합원 공급을 위한 지역축협 및 업종조합

라) 실수요농가(다수인 경우는 대표자 지정)

마) 실수요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3) 구비서류

가) 수입추천신청서 5부

나) 수입내동 소정액(수정란) 실수요자 확인원 사본 1부(원본은 의견서 발급기관 보관)

다) 수입내동 소정액(수정란) 검토의견서 원본 1부

라)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

마) 물품 매도 약약서 사본 1부

단, 상기신청대상자중 “가” “나”호의 기관은 “나-라”호의 서류를 생략하며, 정액사용 계획서 1부를 추가한다. 또한 “다”호의 기관이 신청시 실수요자 확인원은 실수요 조합원 별로 하여야 한다.

4) 추천기관은 연간 수입한도량이 가능한한 년중 고르게 추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을 하였을 때는 사후관리 기관 및 의견서 발급기관에 추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기관으로 불실공급 수입(대행)업자 통보를 받은 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동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1년간 추천을 중단한다.

6)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다.

#### 라. 정액수입(대행)업자 의무사항

1) 정액이 세관을 통과한 때에는 즉시 수입면장 사본을 첨부한 통관보고서를 농림수산부에 제출하고, 의견서 발급기관으로 부터 혈통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혈통확인을 받은 정액은 혈통확인 증명서와 함께 실수요자에게 조속 인도하되, 실수요농가에 정액보관 용기가 없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희망하는 관내축협 또는 민간 가축인공수정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정액 인도가 완료된 즉시 인도보고서를 “별첨 3” 서식에 의거 사후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체조합원 공급을 위하여 지역축협 및 업종조합이 수입신청을 한 경우는 2) 3) 호의 행위를 신청조합이 한다.

5) 통관보고서는 농림수산부 추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지연시는 지연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상기 의무이행이 원활치 못할 경우나 지연사유가 명확치 못할 경우는 해당업자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입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 마. 정액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은 관리대장을 “별첨 4”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되, 수입상사로 부터 공급상황 통보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는 “별첨 5” 서식에 의거 추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당초 실수요자가 목장폐업 등으로 정액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근의 적격농가를 지정하여 잔여량을 인수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이사등 관외로 목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 사후관리기관이 사후관리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바. 기 타

1) 본 요령은 '88.1.1. 부터 적용한다.

2) 신청대상자중 “가” “나” 호의 자가수입한 정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1)

수입냉동 소정액 (수정란) 실수요자 확인원

발급번호 제 호

1. 실수요자

목 장 명 (상호)		대 표 자 성 명	
목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목장설립년도	

2. 젓소 보유두수 및 수정대상두수

축종	규격별 보유두수 (암소)		수정대상두수 (15개월령이상)	수입정액소요량	종모우별소요량
	규	격			
미 경 산 우		1세미만			
		1세이상			
경 산 우					
계					

\* 수입정액 소요량은 수정대상 두수 이내 두수에 두당 1.5개를 곱한 량으로 한다.

위와 같이 수입정액을 사용코자 하니 실수요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조합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4개월

년 월 일

○○조합장

(인)

(서식 2)

실수요자확인원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일	실수요자		규격별보유두수 (암소)				수정대상두수 (15개월이상)	수입정액 소요량	종모우별 소요량	
		주소	성명	미경산우			정산 우				계
				1세미만	1세이상	계					

(서식 3)

수입냉동 소정액 (수정란) 공급상황 통보

확인서발급기관	확인서발급번호	실수요자		소요량		통관		공급내역			
		주소	성명	확인량	추천량	통관일	통관량	공급일	정액보관장소	종모우명	공급량

냉동 소정액 (수정란)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에 의거 상기와 같이  
공급하였기 통보합니다.

198    년    월    일

수입업자(또는 ○○조합) 주소

성명(또는 조합장)

(인)

○ ○ 조 합 장

귀 하

(서식 4)

수입냉동 소정액 (수정란) 사후관리대장

사후관리대상자			확인서발급		농림수산부추천		정액 (수정란) 인수				확 인 결 과				비 고	
관리번호	주 소	성 명	일 자	수 량	일 자	수 량	인수일	품 목	수 량	보 관 소	확인일	이 유	상 후	확인자		서 명
8-1																

(서식 5)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 농림수산부 장관

참 조 : 대가측과장

제 목 : 수입냉동 소정액 (수정란) 공급불실 상황보고

냉동 소정액 (수정란)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입냉동 소정액 (수정란) 공급 불실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사 후 관 리 대 상 자			확 인 서 발 급		농 립 수 산 부 추 천		불 실 상 황		수 입 (대 행) 업 자 명
관 리 번 호	주 소	성 명	일 자	수 량	일 자	수 량	확 인 자	불 실 내 용	

○○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장 (인)

**○ 혈통등록, 산유능력검정,  
외모심사를 통해 개량을 앞당겨 나갑시다.**